# 第 6 章
# 地方財政의 擴充 · 健全化와 地域經濟의 活性化


第1節 地方財政 擴充

第2節 地方財政 健全運營을 위한 制度改善

第3節 地方公企業 競爭力 提高를 위한 經營革新 促進

第4節 地域均衡 發展을 위한 開發事業 積極推進

第5節 地域經濟 活性化 및 失業對策 推進

# 第6章 地方財政의 擴充·健全化와 地域經濟의 活性化

## 第1節 地方財政 擴充

### 1. 地方讓與金 制度改善 方案 마련*

#### 가. 推進背景 및 過程

'91년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재정기반확충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으로 운영되어 그동안 도로사업 등 지방SOC사업의 계획적·안정적인 투자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전화세 등 양여재원 대상사업에 대해서 일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중점 모색하였다.

#### 나. 2000年度 制度改善의 目標와 期待效果

정부의 조세체계개편에 따른 양여금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질오염방지 사업에 양여금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부세과 서기관 강성조 3703-4908

첫째, 조세체계개편에 따른 양여금재원인 주세, 전화세의 개편시 대체재원을 확보하였다.

둘째, 수질개선부문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배분비율 24.5%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30.0%로 상향조정하였다.

셋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현행 「150분의 19」에서 「150분의 23」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넷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다. 制度改善 推進結果

전화세가 2001. 9. 1일 부터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전화세 대체재원으로 지방양여금의 주된 사업인 도로정비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세원의 신장성이 높은 교통세의 일정율로 양여를 받게 되었다.

2001년에는 교통세의 2.4%, 2002년부터는 매년 교통세의 14.2%를 양여하도록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2000.12.29)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세는 교통세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사업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양여금 대상사업간의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지방양여금법 개정도 동시에 이루었다.

또한 2002년부터 도로부문의 주세 6.6%를 수질부문에 전환하고, 농특세 전입비율을 19/150에서 23/150으로 4/150를 확대하여 수질부문에 추가 하는 것을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였다.

**[표6-1-1] 대상사업별 지방양여금 배분비율 조정내역**

| 사 업 별 | 현 행 | 개 정 |
|---|---|---|
| ○ 도로정비사업 | · 특정사업재원 630/1,000<br>· 농특세 6/10 | · 교통세양여재원 전액<br>· 주 세 147/1,000<br>· 농특세 6/10 |
|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 특정사업재원 115/1,000 | · 주세양여재원 141/1,000 |
| ○ 수질오염방지사업 | · 특정사업재원 245/1,000<br>· 주세양여재원 100/1,000<br>· 농특세 4/10 | · 주세양여재원 400/1,000<br>· 농특세 4/10 |
| ○ 청소년육성사업<br>○ 지역개발사업 | · 특정사업재원 10/1,000<br>· 주세양여재원 100/1,000 | 주세양여재원 12/1,000<br>현행과 같음 |

* 2001년도는 교통세양여재원 전액을 전화세양여재원전액과 교통세양여재원으로 함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정부의 조세체계개편에 따라 현행 지방양여금 재원인 전화세의 폐지에 따라 대체재원으로 교통세의 14.2%를 확보(2000년 대비 1,714억원 증가)하여 양여금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실제사업 추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사업추진부처 실무회의 개최,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양여금제도개선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맑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처리장, 하수관리,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양여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기반 구축사업 및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홍수 등 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소하천과 이와 인접한 각종하천 정비사업, 광역시의 자치구 및 읍 · 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추가 등 지방재정 수요변화에 따른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 지방비 부담의 완화, 양여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하여 양여금제도의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운영 방향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 2. 地方交付稅制度 改善方案 마련*

### 가. 推進背景 및 過程

지방교부세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의존재원이지만, 국고보조금과 같이 용도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와 동일하게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자치단체 상호간의 과부족을 조정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정규모의 재원을 보장해 줌으로써 행정의 계획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운영은 대단히 중요하다.

2001년도 지방교부세는 지방 일반회계 49조 564억원의 20.9%에 해당하는 10조 2,433억원의 막대한 규모이다. 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보편 타당한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효율성(efficiency)과 공평성(equity)을 핵심적인 위치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법정화 · 간소화하고, 그 운영을 중립화함으로써 배분과정이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세과 행정사무관 안영환 3703-4906

이와 같은 기조하에 2001년도 보통교부세제도의 운영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보통교부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그 동안 제기되어온 학계의 의견과 자치단체의 건의를 가급적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 ·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학자와 자치단체 예산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제도에 반영토록 했으며 다만, 관련 자료가 부실하거나 여건 등이 미비하여 당장 반영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이후의 개선 과제로 남겼다.

### 나. 主要 改善內容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

2001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방교부세 법정율 15%인상으로 교부세 재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그 동안 재원문제로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기준재정수요액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제기되어 온 수요결정방식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제도를 보완 · 개선하였다.

첫째, 단위비용의 현실화를 통하여 예산근접율을 제고하였다.

지방교부세의 법정율 인상 이후 행정여건의 변화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수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수요(공무원연금 추가부담금, 읍면동 기능전환, 저소득층 지원 등)가 많음에 따라 이들 수요를 단위비용에 포함하는 대신, 기능이 쇠퇴하는 수요는 단위비용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기준재정수요액이 실제 소요되는 규모에 가급적 근접되도록 하였다.

이로서 예산근접율은 전년도에 70% 수준을 88%까지 현실화하게 되었다.

둘째, 보정계수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그간의 보정계수는 『전국 평균』개념에 따라 수요를 형평화하는 보정방법을 적용해 왔으나, 이 경우 『전국 평균』에 의해 지역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단위비용과 보정계수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며, 자치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거나 새로운 수요를 추가하여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단위비용 결정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와 행정수요 산정공식(함수식)을 적용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하고, 도서 · 오지 · 해안지역 등 특수여건에 의한 수요는 표준행정수요 함수식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균형수요액으로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다음, 이를 기초수요(측정단위수치×단위비용)로 나눈 값을 보정계수로 적용토록 하였다. 이로서 단위비용과 보정계수가 연계성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자치단체의 지역특수 수요를 대폭 반영하였다.

이를 위하여 낙후 · 도서지역의 경우 『읍면동비』, 『홍보비』, 『지역개발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30% 증액 반영해 왔으나, 2001년도에는 낙후지역의 심한 인구유출 등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감소와 균형개발 촉진 등을 고려하여 50%까지 증액 반영하였으며, 군주둔지역에 대한 재정수요 보강을 위하여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이외에 『도로비』, 『환경공해비』를 추가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됨을 감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그 면적에 종토세 평균액(1㎡당)의 20% 상당액을 『지역개발비』에 반영하였다.

또한, 도서 · 해안 · 댐 등이 있는 특수지역의 경우는, 방파제 · 방조제 · 물양장과 관련된 수요, 적자노선버스 · 적자도선 관련수요, 댐 · 해양 부유물 제거와 관련되는 수요등을 반영하고,

그린벨트와 자연환경보존지구 등의 경우는 개발가능지역과 규제지역

간의 종토세 차액의 20% 상당액을 반영하였으며, 폐광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지정면적 규모에 따라 표준적인 개발수요를 산정, 『지역경제비』에 반영하였다.

넷째, 국공유재산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에 대한 재정보전을 실시하였다.

국공유재산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으로 인해 세수손실이 크고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종토세중 국공유지에 대한 비과세 감면금액을 추정한 후 그 금액의 20% 상당액을 『지역개발비』에 반영하였다.

다섯째, 도 · 농 통합시에 대한 재정수요 보강 조치를 실시하였다.

도 · 농통합시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도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 · 농복합 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간 당해 시의 동지역과 읍 · 면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 왔으나,

분리산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초 분리산정 때 보다 재정수요가 낮게 책정되므로 도 · 농통합지역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정신을 살리고 현실적인 재정문제 해소를 위하여 분리산정기간 만료 후 5년간에 걸쳐 기준재정수요액의 일정율(9～1%)을 가산토록 하였으며, 분리산정기간 만료 1년 경과시 마다 2%씩 체감하여 적용되도록 하였다.

###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개선

첫째, 지방세를 세목별 ·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추계방식을 다양화하였다.

2001 지방세 추계는 세목별 징수액( '87～ '99)을 이용, 시계열 방식으로 추계하되, 세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세목인 재산세나 지역개발세

의 경우는 선형추계방식을 적용하고, 세수가 정체하는 세목인 종토세나 취득세는 S-curve를 적용하였으며, 지역적으로 발전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은 선형추계방식을 적용하고,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은 S-curve를 적용하여 추계하는 등 세목별 · 지역별로 추계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도에는 자동차관련 세제의 감세개편과 함께 세수감소의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증세개편 되는 지방세가 많음에 따라 이들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에 맞도록 세수추계기법을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경상세외수입 보정을 신설하였다.

그 동안 지방세의 경우는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해 왔으나,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방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불균형이 세외수입에 의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따라서 세외수입 중 용도를 정하지 않고, 모든 단체가 적용되는 안정적인 수입인 경상세외수입을 대상으로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적용될 수 있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 수입액의 일부를 보정(80%)하였다.

### (3) 재정인센티브제도 운영강화

첫째, 인센티브 적용항목을 확대하였다.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 및 자구노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그동안 8종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11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교부세가 지방의 재원보장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효율적인 지출억제 및 세입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인센티브 부여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의 경우 『수요보정 공식』에, 기준재정수입액의 경우 『지방세 추계공식』에 포함되어 자치단체 등이 인센티브 부여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으로 실천의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정계수 또는 지방세 추계시 포함된 인센티브를 별도의 『인센티브』 산정공식으로 분리하고, 이를 종합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 | | | |
|---|---|---|---|
| · 공무원정원 감축 | · 지방세 징수율 | + | · 탄력세율 적용 |
| · 경상경비 절감 | · 주민세개인균등할 | | ·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
| · 일용인부 절감 | · 과표현실화 | | · 지방청사관리의 적정화 |
| · 읍 · 면 · 동 통합 | · 상수도 현실화율 | | |

## 3. 自動車稅制의 合理的 改善*

### 가. 推進背景 및 過程

'90년대 후반이후 자동차가 생활 편의품으로 국민 누구나 소유하게 되면서부터 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새차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10년 이상된 헌차의 경우나 똑같이 배기량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국민적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지방세제담당관실 서기관 류금렬 3703-5019

이에 따라 국민여론 및 정부의 자동차세 관련세제의『취득 · 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정책방향과 무역장벽이라는 이유로 자동차세 부담의 지속적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새차 · 헌차 차등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시 3~5%의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매년 일정액의 면허세를 계속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자동차취득 · 보유단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비추어 자동차 등록분 면허세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주행세율을 인상하게 되었고,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조문정리를 하는 등 자동차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 나. 自動車稅制 主要改善 內容

첫째, 2001. 7. 1일부터 최초 등록후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경감하되, 12년이 되는 해 이후부터는 50%를 균일 경감하도록 하는 새차 · 헌차 차등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동차분 면허세를 폐지하였다.

셋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로 연간 약 5,248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이 있을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이에 대한 보전없이 지방재정에 재흡수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중 거래과세인 취득세 · 등록세나 보유과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인상하여 보전하

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주행세의 세율을 3.2%에서 11.5%로 인상하여 보전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대한 교통세 등 세부담이 인상되게 됨으로 이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 버스, 택시, 화물 등의 요금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수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보조금액 만큼을 주행세율에 반영하게 되었다.

넷째, 2001. 1. 1일 자동차관리법령의 시행으로 종전에 승합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자동차가 승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자동차세도 승용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고 종전소유자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과세유예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까지는 등록시기와 내용에 관계없이 승합으로 과세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07년 이후부터는 승용차 세율로 과세하도록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과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다섯째, 그 동안 국세로 과세되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부담하게 되었다.

여섯째,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제시기간에 한함)를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였다.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2001년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자동차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자동차관련 세제

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헌차의 자동차세 경감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을 마무리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자동차세제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자동차세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4. 免許稅 課稅對象의 整備補完*

### 가. 推進背景 및 過程

면허세는 면허 ·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면허증서 수령시 면허세를 과세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령이 대폭 개편되어 개편된 법령에 맞도록 현행 면허 465종을 전면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99년부터 현행 법령 전체를 조사하여 면허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면허부여 법령을 정리하여 관련부처 및 시 · 도의 의견협의와 관련단체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0. 7. 29일 개정 · 공포하였다.

*지방세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한기 3703-5018

### 나. 推進實績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법령의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없어진 면허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근거규정 폐지에 따라 기계 · 철강공업, 조선업, 항공기 등 관련소재류생산업, 석유화학공업, 섬유류제조업 등 각종 제조업종 등은 면허의 근거가 되는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여관 등 숙박업, 예식장 등 의례식장업, 목욕탕 · 이발 · 미용업, 무역업, 약품도매업, 홍삼판매업, 외국도서수입 · 판매업, 고물 · 전당포영업, 세탁업, 만화대여업 등 각종 소규모 영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기존 면허의 업종 통 · 폐합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을 재정리하였다.

투자자문업이 투자전문업 · 투자알선업 ·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용역경비업이 시설 · 호송 · 신변보호경비업으로, 전기사업이 일반전기사업 · 특정전기사업 · 발전사업 등으로 업종이 세분화함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을 각각 정리하고, 항만용역업 · 물품공급업 · 선박급유업 · 컨테이너수리업이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자동차 제조 · 수리 · 조립 · 정비업 또는 부품제조업 · 중고자동차매매업이 자동차관리사업 등으로 업종이 통폐합됨에 따라 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리하였다.

셋째,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중 종업원수, 영업장 면적 등 크기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세분화된 종별구분중 5종의 경우에는 군지역이 3,000원의 면허세를 과세하고 있어 면허세 고지서 및 우편송달료 등 관리비용에도 못 미치므로 이를 축소하여 4종으로 통 · 폐합하였다.

넷째,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부여 관계법령을 전면 재검토하

여 면허근거 규정이 신설된 새로운 면허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신설하여 공평과세를 도모하였다.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선물거래업, 채권유동화업, 방사선폐기물처리업, 직업정보제공업 등,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 · 수입판매업, 정수기제조업, 통신판매업, 상업서류전달업, 경륜장 설치, 집단에너지공급업, 응급환자이송업, 자동차견인업, 기상예보사업 등, 환경 및 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대행업, 교통영향평가대행업, 온천이용허가, 지하수개발허가 등에 대하여 면허세 과세대상에 추가하였다.

다섯째, 자동차 등록시 과세되는 면허세는 자동차 등록시 과세되는 등록세와 이중과세 소지가 있어 자동차 등록면허를 과세대상에서 삭제하였다.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면허부여 법령별로 면허세 과세대상을 전면 정비함으로써 면허세 과세에 따른 납세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과세대상을 각각의 면허부여 법령별로 구분함으로써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 5. 地方稅 減免對象 縮小 調整*

### 가. 推進背景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고, 불가피하

*지방세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창용 3703-5057

게 감면시한의 연장이 필요한 감면대상에 대하여는 2003. 12.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방세법상 감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나. 推進方向

농어민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근로자 등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는 계속 존치하여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을 지원하고, 법인 · 단체의 감면범위를 고유업무에서 법령상의 사업으로 축소하는 등 포괄적 감면 대상을 특정화 또는 개별화하여 감면범위를 최대한 축소토록 함과 아울러, 사업소세 등 목적세도 가능한 한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형평과 조세중립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국가정책상 감면이 불가피한 사업도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지방행정서비스에 최소한의 비용부담(minimum tax)을 실현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추가 경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주재정 책임(fiscal accountability)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

### 다. 減免 調整 內容

농어민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 수준으로 존치하였고,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에서 25%로 축소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영농 ·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전액면제해 주던 취득세 및 등록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반농민 수준인 50%로 감면 축소하고,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종합토지

세는 50% 경감을 25% 경감토록 하였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해 주던 직업훈련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50% 경감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장기간 감면해온 지적공사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경감과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에 대하여는 전액과세로 전환하였으며,

영리사업 법인으로 국세인 법인세가 과세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가스관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전액면제는 취득세에 한하여 면제토록 하고, 재산세는 50%만을 경감토록 하면서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은 2002년까지만 감면토록 감면시한을 단축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대하여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전액면제해 주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로 경감하되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반대급부적 성격의 응익세로서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경우 50% 경감대상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전액면제 대상인 농업회사법인, 영농 ·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전액과세로 전환하였다.

국민건강을 위하여 암연구 · 치료를 목적으로 신설된 국립암센터에 대하여는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 건설업의 프로젝트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별도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면제토록 하였다.

2000. 1. 1일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된 농지개량조합과 2000. 7.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였고, 사업이 종료된 ASEM 회의장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면서 조세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2000. 12. 31일 이전에 신 · 증축한 부동산에 대해 2001. 12.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재산세 · 종합토지세를 계속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라. 評價 및 發展方向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자주재원으로서 그동안 감면대상을 계속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규모가 '99년도 지방세 총액 18조 5,861억원 대비 11.4%인 2조 1,170억원이나 되어 지방재정의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의 감면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공평과세의 실현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이의 실현을 위하여는 감면대상인 법인 · 단체와 자치단체 그리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연구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감면 관련규정을 지방세법 또는 감면조례로 일원화하는 등 법령정비도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6. 地方稅 納付制度 改善*

### 가. 推進背景 및 過程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으로 전자상거래 및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는 등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세무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지방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송경주 3703-5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이나 수표로만 내야 했으므로 납세자의 불편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도 영수증의 보관 및 세입관리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세무담당공무원의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분야에서도 정보화 사회 및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납세편의시책의 시행은 물론 사이버 세정 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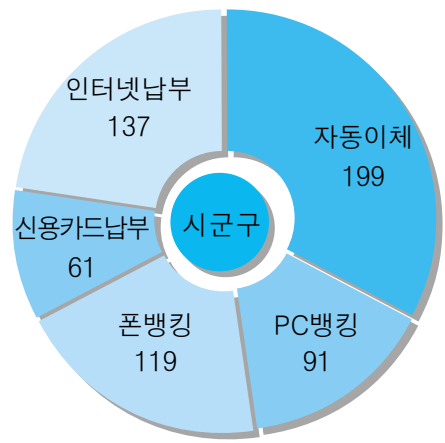
### 나. 納付便宜를 위한 推進狀況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해 국세보다 먼저 '94년 자동이체, '95년 PC뱅킹, '96년 폰뱅킹, '97년 신용카드납부제, 2000. 5월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간 납세편의시책의 발굴과 확대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 · 보완해 왔으며, 2000. 8월『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표결과를 널리 전파하고자 우수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 ·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각종 홍보를 실시하고, 수납대행기관 범위를 확대시

(단위:시 · 군 · 구 수(數))




**[그림6-1-1]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운영현황 (2000. 12. 31.현재)**

키는 등 납세자의 선택가능성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2000. 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금고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수수료 없는 인터넷납부 방식의 신용카드론제를 도입하는 등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추진중이다.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의 도입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반드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향상되었고 과세관청도 세정운영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축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전자납부제 등은 정보통신기반이 잘 갖춰진 대도시 위주로 도입시행중에 있어 아직 PC보급률이 높지 않은 농어촌 지역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나,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납세홍보 등을 통해 확산시켜 지방세 금융기관 무방문 납부처리를 구현하고, 나아가 전자고지와 전자납부의 연계를 통한 사이버상 『One-Stop 납세처리』로 주민만족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第2節 地方財政 健全運營을 위한 制度改善

## 1. 地方財政分析 · 診斷制度 運營*

### 가. 推進背景 및 過程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행정수요의 증대, 인기성 소규모 분산투자, 선심성 경비지출 등 방만하고 불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지침, 투 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등 사전적 지방재정지도 수단과 함께 기편성된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적 지방재정 지도방안도 함께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94. 12. 22)』에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98. 10. 19일 『지방재정 분석 진단실시규정(행정자치부 훈령)』을 제정하여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운용에 알맞는 지방재정 분석 · 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主要內容 및 推進實績

전국 248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운영상황 분석 및 공개를 위해 매 회계연도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기초한 각 자치단체가 작성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객관적 재정지표 중심의 분석결과 재정운영상황의 건전성이 떨어진 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전반적 부실사유 규명과 재정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진단평가위원회』

*재정과 행정사무관 손영재 3703-4936

및『재정진단실무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분석종합 측정결과 재정운영 효율성 측정 5개 지표의 종합점수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표창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정인센티브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재정진단지표개발 등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정진단과 재정건전화계획(권고안) 작성을 위해 재정관련 전문기관에『재정진단실시용역』을 의뢰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3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였고, 2001년도에도 4개 자치단체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재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재정분석 · 진단제도의 발전과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오던 업무를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상설기구로써 재정실무에 경륜이 많은 공무원 등으로『재정진단실무평가단』의 구성 · 운영을 추진하여 재정진단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현행 재정분석 10개 지표와 더불어 보조지표를 개발하고 재정운영 분석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 동기부여로 건전재정 구현과 책임재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OECD 회원국 등 선진국과 국내의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지방재정분석 · 진단 실시모델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재정분석 · 진단을 통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재정분석 · 진단 모델이 향후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2. 地方自治團體 複式簿記會計制度 導入*

### 가. 推進背景

그 동안 자치단체의 회계가 단식부기로 운영됨에 따라 세입 · 세출의 현금수지에 회계의 중점을 두어 계리함으로써 수지균형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외형상 확보할 수 있었으나, IMF를 통해 얻은 교훈과 같이 지방재정의 환경은 변화하고 다양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행정목표의 설정과 이에 따른 달성도의 측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도 현재의 단식부기회계제도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재정운영은 경영개념 도입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산출예산 등 발전된 예산제도의 도입과 주민의 공감과 이해속에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예산 ·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환경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 회계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 되게 되었으며 복식부기의 실제 도입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강구하게 되었다.

### 나. 研究用役完了 및 試驗適用

우리부에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99. 2월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원활한 연구추진을 위하여 '99. 3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연구팀(Task Force)을 구성하였으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산동회계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삼성SDS 등 3개 기관에게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연

*재정과 행정사무관 이상운 3703-4931

구용역을 의뢰하여 2001. 3월 연구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용역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결과의 실무적용 가능성여부 등 자문을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회계제도개선협의회』및『회계제도개선협의회 실무추진반』을 운영하여 연구내용의 평가 · 심의 · 자문 등을 지원해 왔으며,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물로 나온 복식부기 회계기준(안) 및 회계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000. 7. 28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복식부기가 정부의 공공회계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한 100회 이상의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2001. 6월부터는 연구용역결과의『평가검증』을 위하여 시험기관인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우선적으로 회계기준(안) 및 복식부기 전산시스템(LADI)의 시험적용에 들어갔다.

### 다. 導入時 變更되는 制度

복식부기제도는 재정운영의 손익상태(수익-비용)와 재산상태(자산-부채-자본)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따라 계리하는 방식으로서 제도 도입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달라진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복식부기회계기준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하게 될 계획이다.

### [표6-2-1] 복식부기회계 도입시 변경되는 제도

| 구 분 | | 변 경 내 용 |
|---|---|---|
| 없어지는 제도 | 출납폐쇄기한 | ○ 회계연도 종료후 2월말까지 출납사무를 유예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계리(발생주의)시 제도유지 불가능 |
| | 조상충용 | ○ 출납폐쇄기한중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사용하는 것으로 출납폐쇄기한 폐지시 동시 폐지 |
|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 | ○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비용을 계리하기 위한 계정과목 설치<br>○ 회계계리시점, 감가상각기준 등 회계기준<br>○ 예산의 편제를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분리<br>○ 결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금운용표, 재무상태변동표 등 추가 |
| 회계처리 개선사례 | 세금부과 · 징수의 계리 | ○ 부과 ⇒ 징수 ⇒ 대손액을 순차적으로 대변과 차변에 계리하여 조작 · 오류 · 누락방지<br>* 단식부기 : 부과대상, 징수대장 별도관리 연계성 미흡 |
| | 장기계속사업의 계리 | ○ 준공되지 아니한 건설중인 공사의 원가 누계액을 『건설가계정』에 기록하여 공사가 완공시 해당 고정자산 계정에 대체 정리 (총사업비 및 지출액을 종합 적으로 파악가능)<br>* 단식부기 : 자금지출만 기록하고, 완공시 재산대장에 기록 |
| | 지방채 발행 | ○ 적정한 자산규모, 채권과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방채 발행 가능<br>* 단식부기 : 자산이나 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
| | 물품의 구입과 관리 | ○ 물품구입시 현금지출에 따른 물품의 증가를 기록(자산증가)하며, 구입후 결산시 감가상각을 통해 자산의 합리적 평가와 적정한 재구입 시점 등을 파악<br>* 단식부기 : 물품구입시 현금지출과 대응되는 물품이 각 장부에 기록되며 증감의 평가는 어려움 |
| | 토지의 매입과 관리 | ○ 토지매입시 현금의 지출과 지속적인 자산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환지 및 매각시 신속한 의사결정 등 가능<br>* 단식부기 : 토지매입시 현금의 지출과 토지의 증가가 재산관리 대장에 등재(자산재평가를 하여도 회계에 실제 적용되지 않음) |
| | 예산집행결과결산 | ○ 12월말 출납폐쇄 ⇒ 3월말 결산서 작성(6월말 의회제출), (2개월 단축하여 결산업무 수행)<br>* 단식부기 : 2월말 출납폐쇄 ⇒ 5월말 결산서 작성 (8월말 의회제출) |

복식부기제도는 회계처리과정에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게 되어 경영성과 측정의 기초가 마련되고 자산 · 부채 · 자본의 계리를 통해 종합적

인 재정상태를 측정하여 재정위기에 사전 대비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의 오류방지 및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 효율성 · 투명성 확보 및 재정위기에 사전대비가 가능하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익 · 비용 · 자산 · 부채 · 자본을 계리함으로 회계가 복잡해지며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도입시 회계제도 전반을 변경하는 일대 변혁으로 단기간내 정착이 곤란하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 라. 評價 및 向後 推進計劃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은 지방예산 · 회계제도의 기본 골격이 변화하는 것으로 완벽한 제도구축을 위한 면밀한 준비와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조치하는 등 시행착오가 최소화되어야 하며, 수차례의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도 사전 면밀한 준비와 장기간에 걸친 검증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기 실시한 연구용역결과의 『평가검증』, 『시범적용』 및 『제도정비』 등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우선 시험기관인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우선적으로 회계기준(안)과 전산시스템 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실제운영을 통하여 용역결과를 평가검증하고,

2단계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10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시범적용 실시와 이와 병행하여 법령개정 등 제도정비,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2005년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을 통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3. 地方自治團體 債務管理 效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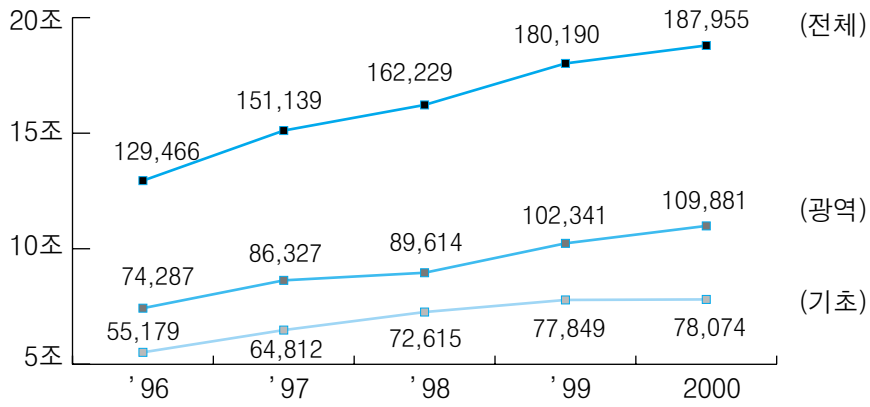
## 가. 背景 및 推進過程

민선자치이후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투자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기채에 의존하여 2000년말 현재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채무규모는 18조 7,95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방예산의 22%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매년 상환되고 있는 평균 채무액 2조 6천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에 예산대비 3% 정도의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 셈이다.

**[표6-2-2] 지방채무 증가 추세**

| 구 분 | '96 | '97 | '98 | '99 | 2000 |
|---|---|---|---|---|---|
| 채무액 | 12조9,466억원 | 15조1,139억원 | 16조2,229억원 | 18조190억원 | 18조7,955억원 |
| 증가율 | 12.3% | 16.7% | 7.3% | 11.1% | 4.3% |




**[그림6-2-1] 지방채무의 광역 · 기초단체의 비교**

*재정과 행정사무관 김한걸 3703-4941

이와 같은 채무규모는 민선단체장 취임 초기인 '96년에는 12.3%의 증가를 비롯하여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채무가 '98년 IMF를 거치면서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어 2000년도에는 4.3%의 증가로 크게 둔화되었다.

채무구조 또한 대부분이 국내채, 특별회계채, 5년 내지 10년 이상의 중장기채 위주의 채무이고,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채무와 달리 지하철 및 도로확충, 상하수도시설 등 지방SOC사업을 위한 투자적 채무로써 향후 상환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표6-2-3] 지방자치단체 채무구조 현황**

| 구 분 | 금 액 | 비 율 |
|---|---|---|
| 국내채 | 17조 8,725억원 | 95% |
| 일반회계채 | 8조 1,127억원 | 43% |
| 단기채(5년미만) | 1조 3,609억원 | 7% |
| 외채 | 9,230억원 | 6% |
| 특별회계채 | 10조 6,828억원 | 57% |
| 중·장기채 | 17조 4,346억원 | 93% |

**[표6-2-4] 지방자치단체 채무투자 현황**

| 구 분 | 금 액 | 비 율 |
|---|---|---|
| 지하철건설 | 2조 1,309억원 | 11% |
| 도로확충 | 3조 7,156억원 | 20% |
| 국민주택건설 | 1조 255억원 | 5% |
| 상하수도시설 | 4조 9,450억원 | 26% |
| 택지·공단조성 | 2조 7,521억원 | 14% |
| 재해복구 등 기타 | 4조 2,264억원 | 24% |

그러나, 최근 국가채무와 더불어 지방채무 규모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

려 제기와 일부 대도시의 경우 과도한 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채무관리 강화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 나. 地方債務管理의 主要內容

지방채무관리를 위한 우리부의 기본방향은 크게 기존 채무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확대와 신규채무 억제를 위한 사전 지방채 승인기준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채무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들은 채무규모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감채기금조례』를 제정, 기금을 별도 적립토록 하고,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상환재원으로 우선 확보토록 하며,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및 주행세 도입으로 증가되는 가용재원은 기채 대상사업의 대체재원 및 채무감축재원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기채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부에서 신규채무 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과거채무상환비율』 기준을 『미래채무상환비율』 기준으로 확대하여, 향후 채무상환여력을 중시하고, 매년 정기분 승인이후 연도중에 신청되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이나 국가 주요시책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외는 승인을 억제하는 등 보다 확대 강화된 승인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2001년부터 지방채무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황을 보다 신속 · 정확하게 파악 관리하고, 『지방재정분석 · 진단제도』와의 연계운영을 통해 지방자

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 다. 評 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에 대한 기채승인권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투 · 융자사업심사제』, 『재정분석 · 진단제도』 등 지방재정운영의 관리 · 감독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므로 방만한 지방재정운영으로 기인한 재정파산의 우려는 없으나, 앞으로 보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지방채무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 시행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 ·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지방채무의 적정관리를 통한 기존 재원의 건전한 운영 외에도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한 안정적인 신규재원의 확보라는 문제도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그 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등 장기저리 정부융자금의 감소문제이다.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매우 낮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융자를 통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매년 이 같은 정부자금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지방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채무관리대책과 더불어 시급한 지방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장기저리자금을 융자 · 지원하는 『지역개발지원금고』를 별도 설립 · 운영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하며, 현재 이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고

있어 추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선자치이후 나날이 증가하는 지방재정수요와 이를 위한 재원의 마련은 현재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당면과제이나,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초래되는 재정악화에 대한 견제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는 『채무관리대책의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다.

# 第3節 地方公企業 競爭力 提高를 위한 經營革新 促進

## 1. 地方公企業 經營評價 및 經營診斷 實施*

### 가. 推進背景

우리부는 '99. 1월 지방공사 · 공단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폐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공사 · 공단 남설에 따른 부실 방지와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와 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地方公企業 經營評價

(1) 경영평가 개요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하여 그 결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 차후의 경영계획에 반영시키는 일종의 사후관리방안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92년부터 도입 · 운영되었으며, '99. 1. 29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성과급과의 연계 및 제도개선분야 발굴을 통하여 경영평가 기능을 강화하였다.

(2) 경영평가 절차 및 방법

경영평가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매2년에 1회

*공기업과 행정사무관 공효식 3703-4970

씩 수행하고 있으며, 간접경영사업인 공사 · 공단도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설립된지 1년 미만인 공사 · 공단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평가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4월부터 8월까지 현지평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단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경영평가계약을 체결한 경영평가기관에서 경영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타 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 (3) 경영평가 지표

경영평가 지표는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6-3-1] 경영평가 지표**

| 평 가 지 표 | 세 부 지 표 |
|---|---|
| 책임경영부문 (15%) | ○ 경영철학과 장기비젼 |
| | ○ 전략경영과 중장기 경영계획 |
| | ○ 공기업 정책의 준수정도 등 |
| 경영관리부문 (25%) | ○ 인사 및 조직관리부문의 효율화 |
| | ○ 노사관리의 합리화 |
| | ○ 재무 · 회계의 적정성 및 관리비용의 효율성 |
| | ○ 경영정보화 추진 등 |
| 사업운영부문 (45%) | ○ 사업계획의 합리성 |
| | ○ 사업추진의 적정성 |
| | ○ 경영효율성 등 |
| 고객만족부문 (15%) | ○ 고객서비스 제도개선 |
| | ○ 고객만족도 제고노력 |
| | ○ 고객지원시스템 구축 등 |

### (4) 경영평가 결과조치

경영평가 결과는 가~마급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표6-3-2] 임원의 성과연봉액(기본급 × 지급율)**

| 경영평가등급 | 가 급 | 나 급 | 다 급 | 라 급 | 마 급 |
|---|---|---|---|---|---|
| 지 급 율 | 450%이하 | 385%이하 | 320%이하 | 260%이하 | 150%이하 |

**[표6-3-3] 직원의 기관성과급(기본급 × 지급율)**

| 경영평가등급 | 가 급 | 나 급 | 다 급 | 라 급 | 마 급 |
|---|---|---|---|---|---|
| 지 급 율 | 300%이하 | 260%이하 | 220%이하 | 180%이하 | 100%이하 |

* 과장급이상(임원제외)의 연봉제 시행자는 『평균기본급×지급율』을 적용하고 직원의 경우 개인성과급 50~150% 별도지급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성과급 외에 경영진단 대상공기업 선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여되는 지방공기업경영대상 수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되고, 경영평가보고서에 적시된 개선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공기업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 (5) 경영평가 추진실적

지방직영기업 63개 및 공사 · 공단 69개 등 총 132개 공기업에 대하여 2000. 4월부터 8월까지 현지평가 위주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였다

직영기업을 제외한 공사 · 공단의 평가결과는 『가』등급은 부산시설관리공단 등 9개 공기업, 『나』등급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20개 공기업, 『다』등급은 제주개발공사 등 21개 공기업, 『라』등급은 전북개발공사 등 11개 공기업,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은 강원개발공사 등 8개 공기업이다.

또한, 20여건의 제도개선 사항 및 건의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등 7개 공기업을 경영진단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표6-3-4] 2000년 지방공사 · 공단 경영평가 등급 현황**

| 등급 | 공 사 · 공 단 유 형 | | | | | | |
|---|---|---|---|---|---|---|---|
| | 서울시 | 도시개발 | 시설관리 | 주차관리 | 지하철 | 기타 | 의료원 |
| 가(9) | - | 광주 | 부산 | | | 인천터미널 | 제주, 청주, 인천, 포항, 서귀포,대구 |
| 나(20) | 도시철도, 강남병원, 지하철공사 | 대전,경기, 경남 | 대구,성남, 안양 | 춘천주차 | 인천 | 장흥표고, 마포 | 의정부,충주, 마산, 서산, 안동, 남원, 천안 |
| 다(21)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 제주,경북, 부산,대구 | 종로,의정부, 강서 | 울산주차 | 대구 | 송파개발, 구리농수산물 | 군산, 공주, 삼척, 속초, 강진, 원주, 부산, 강릉 |
| 라(11) | 도시개발공사 | 전북 | 강북 | - | 구미원예 | | 안성, 목포, 홍성, 영월, 수원, 포천, 금촌 |
| 마(8) | - | 강원 | 부천 | 인천주차 | - | 대전 엑스포 | 김천, 순천, 진주, 이천 |

## 다. 地方公企業 經營診斷

### (1) 경영진단 개요

경영진단은 경영평가결과 특히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하여 경영개선 명령을 내림으로써 지방공기업이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경영평

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비하여, 경영진단은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단제도는 '99. 1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99. 경영평가결과 진단대상으로 선정된 5개 기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 (2)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

경영진단대상 공기업은 3년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지방 공기업,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인력 및 조직 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등이다.

경영진단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 (3) 경영진단반 · 진단지표

경영진단을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경영진단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대상기업별로 경영진단을 위하여 구성하여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진단 보고서를 작성 등을 한다. 경영진단 지표는 공기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조직관리, 인사 · 노무관리, 재무 · 회계, 마케팅 등으로 분류한다.

### (4) 경영진단 결과조치

경영진단실시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개편, 당해 지방공기업 임 · 직원에 대한 감봉 · 해임 등의 인사조치, 사업규모 축소 ·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모든 내용을 경영개선명령으로 할 수 있다. 경영개선의 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 (5) 경영진단 추진실적

'99경영평가결과 부실로 드러난 안동상수도, 수원의료원, 서울지하철, 강원개발공사, 강북도시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공기업별 경영개선명령 내용은 안동상수도는 인원감축 · 조직통합 · 시설물교체, 수원의료원은 인건비율을 전국평균 이하로 유지하고 진료부진과를 폐쇄, 강원개발공사는 사업조정 · 성과급 지급중지 · 조직개편, 강북도시관리공단은 이사장해임 · 사업조정 · 파견공무원 복귀조치 등을 각각 지시하였다.

경영개선명령은 2000. 12월 현재 장기추진과제를 제외하고는 조치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특히, 안동상수도사업소장의 전보조치와 수원의료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경영진의 교체도 병행 추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000. 5월 목포시의 요청으로 목포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강력한 경영혁신 및 인건비율 10%이상 미하향시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하여 경영호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는 '99년 경영진단대상이었으나 공사내 노사협상 문제로 진단이 지연되어 2000. 9월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경영진

단 결과 인력 98명 추가감축, 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의 교육원 통폐합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 경북도의 요청으로 2000. 11월 지방공사 김천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의료원장 해임, 피부과 · 안과 등 진료실적이 부진한 과(科)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라. 評價 및 發展方向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은 지방공기업의 운영상황에 대한 사후적 환류장치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99. 1월 사전진입 규제장치인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주체의 일원화 등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추진중이다

다만, 경영진단의 경우 '99. 1월에 도입되어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시행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실을 제거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수준 높은 평가지표 개발 · 보완과 각 공사 · 공단 임직원들과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평가의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한 우수경영사례의 벤치마킹 활성화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등을 활성화하고 부진공기업에 대한 엄정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이 지방공기업의 건실 경영을 유도하는 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 手數料 · 使用料 現實化*

### 가. 推進背景

수수료 · 사용료는 지방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의 특정인에 대한 역무제공 또는 공물사용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 징수하는 것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며, 지방재정의 경상적 세외수입중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수입항목이다.

이와 같이 수수료 · 사용료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종류와 징수근거의 다양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단체장의 관심소홀, 경영행정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수수료 · 사용료 요율의 장기간 미조정 및 요금체계의 불균형 등으로 지방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였다.

'98년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가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2002년까지 원가보상율의 80%수준까지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코자 하였다.

### 나. 現實化 推進

수수료 · 사용료 요율이 원가대비 60%정도의 수준으로 요율이 장기간 미조정되어 업무처리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초래 등을 해소하고자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조정 또는 원가보상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종목에 우선 순위를 두어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03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매년 자율조정할 계획이다.

*공기업과 행정사무관 김재갑 3703-4971

또한 현실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실화 추진실적이 부진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역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적이 양호한 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부여로 자치단체의 현실화 의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98년도 현실화율이 수수료 62.75%, 사용료 57.8%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2000년말 현재 수수료 · 사용료 모두 73.5%까지 현실화하였고, 2002년까지 현실화 계획목표의 8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화 목표설정 당시인 '98년보다 행정서비스의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매년 목표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 과정상 문제점은

첫째, 일부단체에서는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가 지방자주재정 확충의 주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는 『도정혁신과제』로 선정하거나 단체장 특별지시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하는 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 사용료 요율 인상에 따른 주민여론부담 등을 의식하여 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조례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둘째, 우리부에서는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요율 조정은 수수료의 성격과 조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일시에 과다한 금액인상은 자제하고 분산 조정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충분한 개별원가 분석으로 요율 조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 시행에 앞서 주민 · 시민단체에 대해 다각적인 계도와 홍보로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국가위임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가위임사무 수수료의 현실화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

으므로 국가위임사무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법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하거나 수수료 업무자체를 지방 이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3. 公有財産의 生産的 活用을 위한 制度改善*

### 가. 推進背景 및 過程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지하도상가 · 월드컵경기장 등의 재산은 공법상 허가처분에 의하여 사용을 하는 관계로 각종 제한이 많아 수익성 추구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동산의 경우는 다양한 전세보증금, 월세 등 임대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은 연간사용료(대부료) 방식만을 운영하여 제도가 경직화되어 있었다.

또한, 정부가 인구분산정책에 따라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 · 학교 등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공유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전 촉진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며,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의 경우 경쟁입찰이 원칙인 바 예정가격이 시장수준에 비해 높은 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여 사용 · 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만 교환토록 되어 공장 · 대학 · 공공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면적제한으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경제를 활

*공기업과 서기관 김두수 3703-4975

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지 교환조건을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나. 制度改善 主要內容

첫째, 대형복합건물의 부대 수익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였다.

월드컵경기장 · 국제전시장 · 관상복합건물 · 지하도상가와 같은 대형복합공공시설물의 부대수익시설을 건설중인 때는 공정이 50%이상인 경우 공유재산에 편입하여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범위를 확대하여 일부수익시설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고, 대부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장기대부를 허용하여 대형복합 공공시설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둘째,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공유지 대부 · 매각조건을 완화하였다.

공유지를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대부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장기대부를 허용하였으며, 대부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하나, 대부기간 종료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 등의 신축을 허용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공유재산 대부료 · 매각대 체감제도를 도입하였다.

예정가격이 높아 2회 이상 입찰을 하여도 대부 ·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예정가격의 50%한도(매각의 경우 80%)를 기준, 3회 입찰 때부터 10%씩 체감조정이 가능토록 하여 장기간 대부 또는 매각되지 않은 재산의 대부 · 매각을 촉진토록 하였다.

넷째,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시 손실보상을 확대하였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지할 때는 대부 미경과 기간에 대한 시설비 또

는 이전비만 보상을 하였으나 미경과 기간의 시설비 및 이전비에 함께 영업손실액도 보상을 확대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였다.

다섯째, 공유재산의 교환요건을 완화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경우에도 교환을 허용토록 하고 면적조건을 폐지하여 가격조건만 충족되면 교환이 가능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지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다. 評價 및 發展方案

민간부동산시장의 다양한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였으며, 기타 공유재산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 第4節 地域均衡 發展을 위한 開發事業 積極推進

## 1. 地方道路整備事業 推進*

### 가. 背景 및 推進經緯

지방도로정비사업은 '80년 이전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새마을사업 등 소규모로 개발해 오다가 '81년부터는 IBRD차관사업, '87년부터 '90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91년부터 지방양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95년까지는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포장 사업에 주력하여 왔으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발전 등으로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정체 심화로 4차선 확·포장, 읍·면 우회도로 등 교통소통대책사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94. 10.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으로 노후 위험교량의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도로개발 정책방향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4. 12월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여 '95년부터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포장사업과 병행하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지방도·군도의 4차선 확장, 읍·면 우회도로, 장대교, 터널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위험교량 등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고 있다.

*지역진흥과 토목사무관 민병대 3703-4992

### 나. 主要 事業內容(地方讓與金 事業)

'90. 12. 31일 지방양여금법 제정으로 지방도로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비도 대폭 증액하게 됨으로서 지방도로개발의 획기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지원대상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도, 군도에서 광역시도, 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특히, 비법정도로로서 개발대상에서 소외된 농어촌도로는 '91.12.14일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제정하여 법정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과 양여금을 양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울러 지방도, 군도 등 상위도로와 연계된 개발로 농어촌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94년까지 지방도로개발사업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연계성과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리도 확 · 포장사업에 주력하여 왔으나,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교통체증 현상심화로 교통소통대책사업 등과 같은 지방도로 개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94. 10.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지방도로상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도로개발 정책방향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95년부터 지방도로개발사업은 과거의 물량위주에서 탈피하여 교통소통, 지역개발기여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기본방침아래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경제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지방도로 도로별 현황은 [표6-4-1]과 같다.

### [표6-4-1] 지방도로 현황

(단위 : km)

| 도로별 | 대상연장 | '99까지실적 | 2000실적 | 장래계획 | 포장률(%) | 도로관리청 |
|---|---|---|---|---|---|---|
| 계 | 136,684 | 63,265 | 1,346 | 72,073 | 47 | |
| 광역시도 | 12,256 | 7,866 | 30 | 4,360 | 65 | 광역시장 |
| 지방도 | 17,155 | 13,492 | 230 | 3,433 | 80 | 도지사 |
| 시 도 | 29,065 | 17,167 | 213 | 11,685 | 60 | 시 장 |
| 군 도 | 15,855 | 7,023 | 274 | 8,558 | 45 | 군 수 |
| 농어촌도로 | 62,353 | 17,717 | 599 | 44,037 | 29 | 시장·군수 |

### [표6-4-2] 2000년 지방도로별 정비현황

| 단위사업명 | | | 사업량 (km) | 사업비(억원) 계 | 양여금 | 지방비 | 지방비 부담률(%) | 포장율(%) ('99⇒2000) |
|---|---|---|---|---|---|---|---|---|
| 총 계 | | | 1,346 | 26,949 | 17,800 | 9,149 | | 46.3⇒47.3 |
| 광역시도 | | | 30 | 6,016 | 3,008 | 3,008 | 50 | 64.2⇒64.5 |
| 시의국도 | | | 57 | 4,178 | 2,507 | 1,671 | 40 | 81.0⇒83.3 |
| 시의도 | 계 | | 156 | 3,202 | 2,339 | 863 | | 57.0⇒57.5 |
| | 동지역 | | 26 | 1,113 | 668 | 445 | 40 | 61.0⇒61.1 |
| | 읍면지역 | 소계 | 130 | 2,089 | 1,671 | 418 | 20 | 47.0⇒48.3 |
| | | 사리도포장 | 99 | 836 | 668 | 168 | | |
| | | 교통소통대책 | 31 | 1,044 | 836 | 208 | | |
| | | 유지관리 | 1식 | 209 | 167 | 42 | | |
| 지방도 | 계 | | 230 | 5,570 | 3,342 | 2,228 | 40 | 78.7⇒79.7 |
| | 사리도포장 | | 178 | 2,228 | 1,337 | 891 | | |
| | 교통소통대책 | | 52 | 2,785 | 1,671 | 1,114 | | |
| | 유지관리 | | 1식 | 557 | 334 | 223 | | |
| 군도 | 계 | | 274 | 3,760 | 3,008 | 752 | 20 | 44.3⇒45.4 |
| | 사리도포장 | | 179 | 1,504 | 1,203 | 301 | | |
| | 교통소통대책 | | 95 | 1,880 | 1,504 | 376 | | |
| | 유지관리 | | 1식 | 376 | 301 | 75 | | |
| 농어촌도로 | | | 599 | 4,223 | 3,596 (1,089) | 627 | 20 | 28.4⇒29.4 |

* ( )은 농특세 예산임.

2000년도 지방도로정비사업은 총 2조 6,949억원을 투자, 1,346㎞를 정비하여 포장률이 47.3%로 신장되었으며, 특히 지방도, 군도상의 4차선 확 · 포장, 읍 · 면 우회도로, 장대교 가설 등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총 5,709억원을 투자, 178㎞를 정비하여 지역개발촉진과 교통소통 원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0년도 지방도로별 정비현황은 [표6-4-2]와 같다.

### 다. 評價 및 向後推進 計劃

그 동안 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연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 · 포장사업과 병행하여 교통 정체구간 해소와 노후위험교량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 투자하여 2000년까지 총 대상 136,684㎞중 64,611㎞를 확 · 포장하여 지방도로의 포장률을 47%까지 향상시켰으며, 도로의 기능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장도로 보수, 굴곡도로개량, 안전시설 확충 등의 중점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교통정체해소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로 농어촌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는 지방도로의 정비사업은 2001~2009년까지 9개년간 총 28조 853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정체가 극심한 12,404㎞를 정비하여 포장률을 47%에서 55%까지 제고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총 302조 2,4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6-4-3] 지방도로 9개년(2001~2009) 장기계획**

(단위 : ㎞, 억원)

| 단위<br>사 업 별 | 2001~2009 | | 포 장 률(%)<br>2001⇒2009 |
|---|---|---|---|
| | 사 업 량 | 사 업 비 | |
| 계 | 12,404 | 288,531 | 47 ⇒ 55 |
| 광역시도 | 270 | 54,144 | 64 ⇒ 66 |
| 지 방 도 | 1,935 | 49,345 | 81 ⇒ 90 |
| 시 도 | 2,345 | 113,198 | 62 ⇒ 67 |
| 군 도 | 2,466 | 33,840 | 47 ⇒ 57 |
| 농어촌도로 | 5,388 | 38,004 | 27 ⇒ 39 |

## 2. 落後地域開發事業 推進*

### 가. 事業概要

산간 · 오지, 도서 · 낙도 등 소외지역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지개발촉진법('88)』과 『도서개발촉진법('86)』을 각각 제정하고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97년도에 1차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98년부터 2차 계획에 의거 향후 10개년('98~2007)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9년도에 10개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 근거법인 오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99년까지로 된 한시법을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제2차 5개년(2000~2004)계획에 의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역진흥과 서기관 정라곤 3703-4989

**[표6-4-4] 제2차 오지 · 도서종합개발 기본 계획**

| 구 분 | 오지종합개발계획 | 도서종합개발계획 |
|---|---|---|
| 기 간 | · 2000~2004(5개년) | · '98~2007(10개년) |
| 대 상 | · 399개 오지면 | · 410개 도서(10인이상 상주도서 등) |
| 사업량 | · 생활 · 생산기반시설 등 5개분야 5,878건 | · 생활기반시설, 생산기반시설, 환경개선 등 3,156건 |
| 사업비 | · 8,018억원 (양여금, 지방비 등) | · 9,683억원 (국비, 지방비, 민자) |

## 나. 推進實積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개 도서에 전기 · 급수 · 교통 등 생활기반시설 214건, 어항시설 · 농업기반시설 ·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159건, 환경 · 위생 · 의료 · 복지시설 등 환경 복지시설 27건 등 총 400건에 68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46개 오지면 중 낙후정도 등 지역여건과 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도로개설 확장 및 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 750건, 도수로 · 취입보 등 생산기반시설 116건, 마을회관 · 경노당 등 문화복지시설 127건, 하수도 · 공중화장실 등 환경위생시설 46건, 소하천정비 · 가로등 설치 등 생활안전시설 85건 등 총 1,124건에 1,471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도서지역과 산간 · 오지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편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을 확충 ·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향상의 혜택과 함께 자립정신 함양과 정주의욕 제고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였다.

**[표6-4-5] 오지·도서 개발사업 추진실적**

| 구 분 | 오지종합개발계획 | 도서종합개발계획 |
|---|---|---|
| 기 간 | · '90~2000(11년간) | · '88~2000(13년간) |
| 대 상 | · 403개 오지면 | · 449개 도서(10인이상 상주도서 등) |
| 사업량 | · 7,321건 | · 3,439건 |
| 투자실적 | · 9,652억원 | · 4,716억원 |

### 다. 評價 및 向後 發展方向

오지·도서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제1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제2차 사업부터는 주거환경개선과 아울러 주민소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낙후지역개발전략의 재정립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로 오지·낙후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에는 다소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의 낙후성 탈피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사업대상지역의 재조정, 개발지표 및 개발수준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시 측정하고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낙후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전략을 재정립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의 확대다.

그 동안 부분적으로는 오지 및 도서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았지만 타지역 수준의 종합적인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투자는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단독적 투자만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가급적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민 · 융자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방법의 개선이다.

오지개발사업의 경우 전국 399개 오지면 수에 따라 지방양여금을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지만 현재의 투자방법을 개선하여 지역의 낙후정도와 개발수요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해 나갈 계획이다.

## 3. 接境地域의 體系的 支援 强化*

### 가. 推進背景 및 過程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과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시설보호 등 국가 정책적인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로 경제활동의 인위적 통제와 SOC의 투자미흡으로 지역개발이 저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반면, 넓은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등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갖춘 지역으로서 통일대비 전진기지와 남북교류협력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어 국가차원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99. 10. 27일 국회의원 209명의 발의로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0. 1. 21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0. 8. 28일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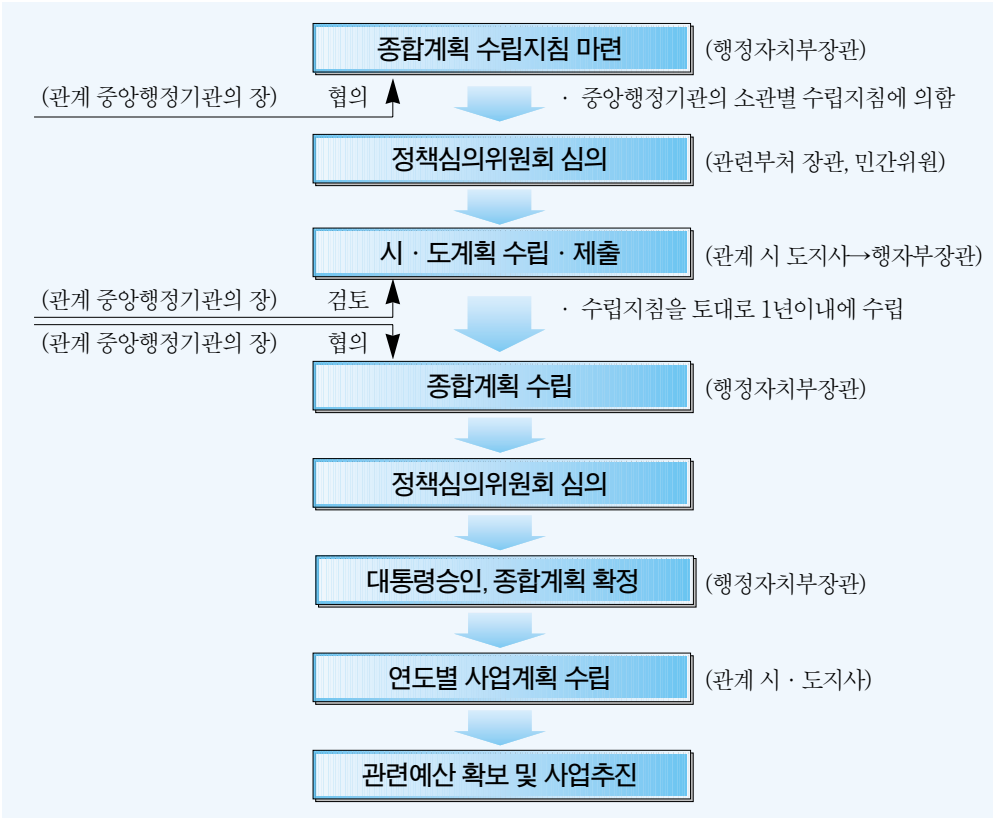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령의 추진절차에

*지역진흥과 서기관 정라곤 3703-4989

의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본방향과 정책적 지침이 제시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였다.

### 나. 接境地域 範圍 및 支援의 主要內容

접경지역의 범위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인천, 경기, 강원도 등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으로 이는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이내에 소재한 시·군의 읍·면·동으로서 5개의 측정지표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미만인 지역을 비롯하여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 중 집단취락 농업생산 남북한교류협력사업추진 등의 지역과 서해 5도서 및




[그림6-4-1] 접경지역 지원절차

옹진군 북도면도 포함되었다.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 관리 및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10년 단위 중 · 장기계획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 ·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전국 평균 수준까지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에 따라 3개 시 · 도, 15개 시 · 군, 98개 읍 · 면 · 동의 접경지역은 그 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국고지원의 확대 등 체계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첫째, 기본적인 방향제시와 정책적 지침서인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관계 시 · 도에서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시 · 도접경지역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둘째,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시 · 도 접경지역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사전협의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하여 관계부처 및 시 · 도에 시달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4. 2002월드컵對備 國土가꾸기事業 推進*

## 가. 推進背景

2002년 월드컵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 한국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드컵 대비 국토가꾸기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2002년 월드컵 개최전까지 국토공원화사업,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등 크게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主要 事業內容

첫째, 국토공원화사업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되, 가로변 소공원조성, 생활주변 공간녹화, 하천 수변환경정비 등 3개부문에 총 4,068억원을 투자하여 11,121개소에 55,183천㎡를 정비함으로써 연인원 673만명에 달하는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2000년도까지 총 3,148억원을 투자하여 9,398개소, 45,349천㎡에 달하는 면적에 도로변 소공원조성, 생활주변 공간녹화 및 하천 수변환경을 정비하여 연인원 54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표6-4-6] 국토공원화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 구 분 | | 계 | '99 | 2000 | 2001 | 2002 |
|---|---|---|---|---|---|---|
| 사업비(백만원) | | 4,068 | 1,546 | 1,602 | 833 | 87 |
| 사업량 | 면적(천㎡) | 55,183 | 21,728 | 23,621 | 9,560 | 274 |
| | 개소 | 11,121 | 4,550 | 4,848 | 1,712 | 11 |

*지역진흥과 토목사무관 민병대 3703-4992

둘째,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총 550억원을 투자하여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심지 생활주변, 주요도로 · 철도변 등의 공원, 화단 및 꽃길 1,705개소에 2,724천본의 무궁화를 식재하여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2002년에는 전국 방방곡곡이 무궁화로 물결치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에게 나라꽃 사랑을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2000년도에는 총 203억원을 투자하여 712개소에 1,373천본의 무궁화를 식재하였다.

**[표6-4-7]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 구 분 | | 계 | 2000 | 2001 | 2002 |
|---|---|---|---|---|---|
| 사업비(백만원) | | 55,052 | 20,341 | 19,989 | 14,722 |
| 사 업 량 | 개 소 | 1,705 | 712 | 573 | 420 |
| | 천 본 | 2,724 | 1,373 | 781 | 570 |

셋째, 관광 ·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총 845억원을 투자하여 백제 · 신라 · 유교권 등 문화유적지 10개 시 · 군과 문화 · 관광거점지역 13개 시 · 군 등 23개 시 · 군의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하에 2000년도에는 총 308억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관광표지판, 휴게시설 및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였다.

**[표6-4-8] 관광 ·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 구 분 | | 계 | 2000 | 2001 | 2002 |
|---|---|---|---|---|---|
| 사업비(백만원) | | 84,586 | 30,829 | 21,428 | 32,329 |
| 사 업 량 | 시 · 군 | 23 | 22 | 20 | 20 |
| | 개 소 | 3,886 | 1,042 | 825 | 2,019 |

### 다. 評價 및 向後推進計劃

월드컵대비 국토가꾸기사업 2차 년도인 2000년까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도로변이나 아파트단지 등 생활주변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총 9,398개소를 정비하여 국토환경을 크게 개선함은 물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연인원 5,397천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였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2년도에는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토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우리 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다시 찾고 싶은 관광 한국』으로 거듭나게 됨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한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 5. 農漁村住居環境改善 事業推進*

### 가. 槪要 및 推進背景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7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지붕개량에서 시작하여 노후 · 불량 농어촌주택 개량 및 부엌 · 화장실 개량, 마을정비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가 · 확대시킴으로써 현재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전하여, 자연환경과 높은 소득이 잘 조화된 21세기의 생동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도시의 중산층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진흥과 건축사무관 이중재 3703-4767

## 나. 推進實績

2000년까지 총 3조 6,219억원을 투자하여 344천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하였고, 5,175개 마을의 하수도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94. 6. 14일 농어촌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4천억원 정도를 2008년까지 계속 지원하여 161천동의 농어촌 주택의 현대식 개량 및 2,908개 마을의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95. 12. 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과 '96. 7. 1일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99. 1. 18일 불합리한 제반규정을 정비하여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농어민의 불만 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도에는 주택개량 8천동 1,550억원, 마을정비 170개 마을 532억원, 빈집정비 6,191동 21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표6-4-9]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 주택개량 | | 마을정비 | | 빈집정비 | |
|---|---|---|---|---|---|---|---|
| | | 동수(천동) | 사업비 | 마을수 | 사업비 | 동수 | 사업비 |
| 전체계획 | | 505 | 64,365 | 8,083 | 15,768 | 76,716 | 241 |
| 추진실적 | '76~'99 | 336 | 30,624 | 5,005 | 3,513 | 18,937 | 65 |
| | 2000 | 8 | 1,550 | 170 | 532 | 6,191 | 21 |
| 향후계획 (2001~2008) | | 161 | 32,191 | 2,908 | 11,723 | 51,588 | 155 |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그 동안의 사업추진으로 농어촌의 주거환경이 상당수준 개선되었고, 도시형 주거문화를 희망하는 농어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다수지역에 소규모 분산 지원함에 따른 투자효과의 저하, 지역별 · 마을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의 추진 등 다소 개선 ·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동안 나타났던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단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주택개량 등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농어촌도로, 경지정리, 생활용수 개발 등 정부의 각종 시책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사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통성, 상징성 등 잠재된 특성을 적극 발굴, 관광상품 등으로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만이 아닌 잠재소득원 발굴과 연계한 실질적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이 유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우대지원 해 나가도록 하겠다.

## 6. 都市달동네住居環境改善 事業 推進*

### 가. 概要 및 推進背景

'89. 4월 제정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소외감 불식 및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 확충으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89년부터 2004년까지 1,435개의

*지역진흥과 건축사무관 이중재 3703-4767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대상으로 도로 및 상 · 하수도 등 생활편익 기반시설에 총 3조 2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 나. 推進實績

그 동안 '89년부터 2000년까지 연 1,980개 지구에 총 1조 4,238억원을 투자하여 6,624건의 생활편익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주변환경을 말끔히 단장하는 등 과거의 달동네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도에는 생활기반시설 56건에 600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달동네 주거환경개선을 하였다.

'89. 4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지원 부족으로 달동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99. 12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을 개정, 사업기한을 2004년까지 연장하였고,

2000. 12. 1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잔여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6-4-10]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투자현황**

(단위 : 건, 억원)

| 사 업 명 | 총 계 | | 추진실적('89~'99) | | 추진실적(2000) | |
|---|---|---|---|---|---|---|
|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계 | 6,624 | 14,238 | 6,568 | 13,638 | 56 | 600 |
| 생활기반시설 | 3,428 | 12,576 | 3,372 | 11,976 | 56 | 600 |
| 환경위생시설 | 1,685 | 894 | 1,685 | 894 | - | - |
| 생활안전시설 | 1,133 | 239 | 1,133 | 239 | - | - |
| 후생복지시설 | 378 | 529 | 378 | 529 | - | - |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그간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생활편익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주변 환경을 말끔히 단장하는 등 과거의 달동네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도시영세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외감을 불식하고 자립 의욕을 고취 시켰다.

또한, 2000. 1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를 대폭 투자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계획에서 소외되고 빈곤감이 심화되던 도시저소득 주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3개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7. 자전거이용 活性化事業 推進*

### 가. 背景 및 推進經緯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심각한 도시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등 근검 ·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93년부터 행정자치부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95.1.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전거 도로 · 주차장 등 관련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자전거 통행방법, 안전문제 등 자전거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역진흥과 토목사무관 민병대 3703-4992

### 나. 段階別 推進計劃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 등 이용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자전거타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 횡단보도턱 정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잠재되어 있는 자전거이용 수요를 유발하여 2010년까지는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을 '99년말 현재 2.4%에서 10%까지 제고시켜 레져스포츠 중심에서 생활중심의 자전거타기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제1단계인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자전거타기 기초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시책 사업으로 총 7천억원을 투자, 자전거도로 5천㎞와 자전거보관대 50만대분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2단계인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제1단계 추진성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자전거도로 5천㎞와 자전거보관대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지속 ·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다. 推進實積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부산 · 대구 등 6개 광역시와 김천 · 고양 · 서귀포 등 36개 중소시범도시의 중심으로 집중정비와 통근 · 통학로, 지하철 등 생활권 중심노선의 우선 정비 및 자전거이용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별 완결 위주로 추진하였다.

2000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추진실적은 797억원을 투자하여 702㎞의 자전거도로와 361천대분의 자전거 보관대 및 8,567개소의 횡단보도턱을 정비하였다.

**[표6-4-1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현황**

| 구 분 | 계 | '97까지 | '98 | '99 | 2000 |
|---|---|---|---|---|---|
| 사업비(백만원) | 513,176 | 217,740 | 98,742 | 116,959 | 79,735 |
| 자전거도로(km) | 4,908 | 2,105 | 916 | 1,185 | 702 |
| 보관대(대분) | 281,487 | 169,804 | 35,024 | 40,511 | 36,148 |
| 보도턱(개소) | 68,419 | 41,506 | 7,109 | 11,237 | 8,567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출·퇴근과 근거리 출장시 등 자전거 이용에 솔선수범 함은 물론 근로자·학생 등의 통근·통학시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잠재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유발하고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의 날』·『자전거의 날』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단체·동호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범지역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150여회 전개하였다.

**[표6-4-12] 자전거 보유현황 및 교통수송 분담율**

| 구 분 | 자전거 보유현황 | | | | 교통수송분담율 | | |
|---|---|---|---|---|---|---|---|
| | 인 구 (만명) | 자전거보유 (만대) | 자동차보유 (만대) | 자 전 거 보유비율 (인/대) | 자전거 도로연장 (km) | 1인당자전거 도로연장 (m) | 교통수송 분 담 율 (%) |
| 한 국 | 4,734 | 650 | 1,200 | 7.3 | 4,908 | 0.104 | 2.4 |
| 일 본 | 12,478 | 7,100 | 6,290 | 1.76 | 70,761 | 0.567 | 25.0 |
| 독 일 | 6,100 | 4,520 | 2,600 | 1.35 | 15,000 | 0.245 | 26.0 |
| 네덜란드 | 1,470 | 1,100 | 490 | 1.34 | 30,000 | 2.040 | 43.0 |

### 다. 評價 및 發展方向

지금까지 5,132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4,908km, 자전거보관대 281천대, 횡단보도턱 68,419개소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 캠페인을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과 시민 · 단체 동호인들이 자전거타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10년까지 단계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개선하고 레져스포츠 중심에서 생활중심의 자전거타기로 전환되도록 할 계획이다.

# 第5節 地域經濟 活性化 및 失業對策 推進

## 1. 地域經濟活性化 方案 講究*

### 가. 推進背景

IMF 경제위기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본사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조합의 설립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장려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시책평가 등 행 ·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강구해 왔다.

### 나. 地域經濟活性化 施策推進

첫째, 본사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였다.

지방이전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며, 국 · 공유재산을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둘째,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을 확대 추진하였다.

기술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과 신용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99. 9월 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여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시 · 도에 설립되었고, 2000년 한해 동안 총 22,680개 업체에 8,172억원을 신용보증하였으며, 미설치된 전남 · 북, 제주도에 대해서도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관 강승화 3703-5461

셋째,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였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총 1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시책사업에 활력화를 불어 넣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을 강구하였다.

2000년 4/4분기이후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및 금융시장의 불안, 소비 ·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부 차원에서 지방중소유통업 및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재래시장중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을 선정하여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IT(정보기술) · BT(생명공학)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등 각종시책을 강구하였다.

### 다. 評價 및 發展方案

지금까지 우리부는 지역경제활성화 업무를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하여 왔으나, IMF이후 계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속에서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과거 조직개편으로 지역경제국이 폐지되는 우여곡절 속에서 그간 지원되던 각종 시책사업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크나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우리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IT(정보기술) · BT(생명공학) 등 지역전략산업육성에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호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2. 地方中小企業 資金의 支援등 育成施策 推進*

### 가. 推進背景

지역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은 업체수 기준으로 99.1%, 종업원수 기준으로 75.3%로서 높은 국민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경쟁력 및 재무구조가 취약함은 물론 최근 IMF체제이후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난해소, 기술 및 정보화 지원,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의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 나. 中小企業支援 强化

첫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강화하였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대책을 위해 2000년 한해 20,524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3조 3천억원을 지원하였고, 기술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과 신용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99. 9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최초로 제정하여, 2000. 12월말 현재 13개 시 · 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00년 한해 동안 총 22,680개 업체에 8,172억원을 신용보증함으로써 영세 상공인들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설립 전남 · 북, 제주 등 3개 도에 대해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였다.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관 강승화 3703-5461

기업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실시하여 10조 3천억원을 구매하였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총 66회 592개 업체를 참여시켜 530백만불을 계약하였으며 이외에도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알뜰시장 개최 등 다각적인 판로시책을 펼쳐 나갔다.

셋째, 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하였다.

지방이전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며, 국 · 공유재산을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정비하였다.

넷째, 지역건설업체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하였다.

규제개혁차원에서 2001. 1.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되었던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 축소시기를 2001년말까지 1년간 기간연장하여 지방소재 중소건설업들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234억미만까지 안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비율을 40%이상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방건설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 하였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외시장개척활동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영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에 총 10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관심을 제고시켰다.

중소기업육성시책 평가결과 부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원군이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경기도, 경남 창원시, 경기 안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 북제주군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고, 충청남도, 강원 춘천시,

전북 순창군, 경북 칠곡군, 제주시가 각각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다.

### 다. 評價 및 發展方案

우리부 및 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극적인 지원 및 창업촉진을 위한 직접 투자금의 조성과 해외시장개척,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 정보화, 기술개발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방재정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 한해동안 41,460개의 신설법인이 창업되고, 수출 증가율도 29.5%나 신장하였으며, 특히 생계형 소기업이 많이 창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소기업인들은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은행수신금리가 하향된 만큼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6.75%에서 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우보증을 선호하는 은행대출 관행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난 완화와 이차보전 확대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확대를 유도하고 정보 · 산업인프라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비지원 등 지방재정의 생산적 투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 3. 地方物價安定對策 推進*

### 가. 地方物價管理 推進槪要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서민가계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책을 통해 관리하며,

물가관리품목은 총 509개 품목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총 59종으로 설렁탕, 불고기, 이용료, 숙박료, 입장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49종과 상 ·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택시, 도시가스료, 중 · 고교납입금 등 13종을중점관리 하고 있다.

### 나. 物價安定推進 內容

첫째, 지방물가대책 추진체제를 확립하였다.

16개 시 · 도 및 232개 시 · 군 · 구에 자치단체별로 『지방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 설 · 추석, 행락철 등의 물가를 집중 관리하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타당성 검토 및 사전심의를 통해 물가인상억제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2000년도 한해 동안 물가대책위원회 510회, 실무위원회 636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 1,736여명의 유급모니터를 확보하여 주 1회 이상 현장에서 물가동향을 확인하는 등 물가안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갔다.

둘째,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방지를 위한 지도 · 단속을 강화하였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동지도 · 단속반 225천명을 동원 2,013개 업소를 점검, 과다인상, 가격표 미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관 강승화 3703-5461

부착 업소 등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단체를 통한 가격과다 인상감시와 민 · 관합동 자율결의대회 등을 전개하였다.

셋째, 모범업소에 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물가안정 저변확대와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75천여개 모범업소에 대해 2억여원의 상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지원 등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사업자단체와 농 · 수 · 축협간 직거래센터 및 농수산물 상설직판장을 개설 운영하여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지방물가안정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 ·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당 최고 2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까지 총 108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물가관리에 고생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있다.

2000년도 지방물가안정 전국 최우수 기관은 충청남도가 선정되어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다. 評價 및 發展方案

전 자치단체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개인서비스요금은 연 평균 0.9% 상승에 그쳐 정부가 정한 소비자물가 목표 3%를 훨씬 밑돌아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물가관리업무중 개인서비스요금은 업소 등 협회의 자율결정사항이고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으로 효율적인 물가안정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물가안정시책 적극추진 유인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쓰레기 봉투료, 상수도감면액 전액보조 등의 재정인센티브 확대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자율 감시, 고발, 불매운동 등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겠다.

## 4. 地方自治團體 公共勤勞事業의 實效性 確保*

### 가. 推進背景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99. 2월 8.6%(실업자수 1,781천명)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99. 9월 이후에는 4%대가 유지되었으며, '99년도의 연평균 실업률은 6.3%(1,353천명)로 '98년도 6.8%보다는 약간 낮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2000년도의 실업률을 4%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을 급격하게 축소 폐지하면 저소득 실업자 등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99년도 당초예산(8,191억원)의 73% 수준인 5,995억원(국비 3,000억원, 지방비 2,995억원)으로 확정하였다.

예산 확정후 정부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시적 · 단기적 실업대책보다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본원적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동절기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2000년 1/4분기에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액의 70%이상을 1/4분기에 집중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종합실업대책』을 2000. 1. 14일 확정하였다.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관 이창수 3703-5457

### 나. 推進經緯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은 『실업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훈령 제96호)』에 의하여 설치된 정부 실업대책실무위원회에서 '98. 12. 8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에 시달 · 통보하였다.

본 지침에 의거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99년도와 마찬가지로 정보화, 생산성,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사업 등 4대 사업 9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호적전산화사업, 수돗물절수사업 등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 추진토록 하였다.

당초 2000년도 예산을 총 5,995억원(국비 3,000억원, 지방비 2,99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집중 편성 · 운영한 결과 하반기 사업비는 295억원에 불과하였다. 7월부터 실시된 제3단계 사업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비비 등을 이용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한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비의 부족으로 사업을 일시 중지한 곳도 있었다.

상반기의 집중운영으로 하반기 사업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1,200억원을 확보하여, 우리부에서는 2000. 10. 9일부터 12. 30일까지 제4단계 사업을 조건부 수급자 약 35천명을 참여시키는 등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 다. 推進實績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국비예산(추경예산 포함) 4,200억원과 지방비 3,698억원 등 총 7,898억원의 예산을 단계별로 시 · 도에 배정하였다. 배정기준은 '99년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실업자수(80%)와 신청자

수(20%)를 고려하여 정보화, 국토공원화사업 등 국가 현안사업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으며, 제4단계 사업비는 시 · 도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실업자수와 신청자수를 각각 50%로 하여 배정하였다.

**[표6-5-1] 2000년도 국비(공공근로사업) 단계별 배정액**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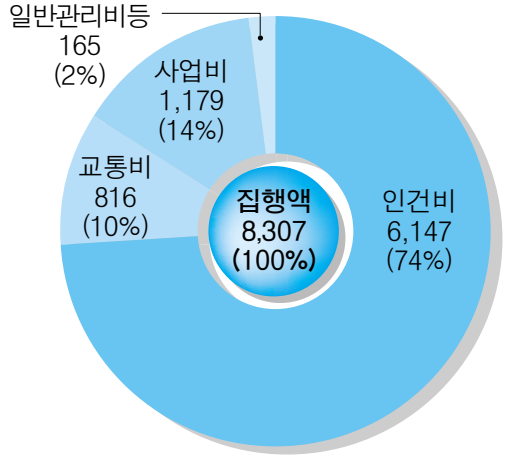
| 총 액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제4단계 | 비 고 |
|---|---|---|---|---|---|
| 4,200<br>(100%) | 1,900<br>(45.2%) | 950<br>(22.6%) | 145<br>(3.5%) | 1,199<br>(28.6%) | 6억원은 재해<br>유보비 등 편성 |

2000년도의 사업비 집행은 '99년도 이월액 1,201억원을 포함하여 총 8,307억원을 집행하였다.이중 저소득 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84%인 6,963억원을 인건비, 교통비로 집행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정보화 · 생산성 사업에 사업비의 70%인 5,826억원 이상을 집행함으로써 행정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큰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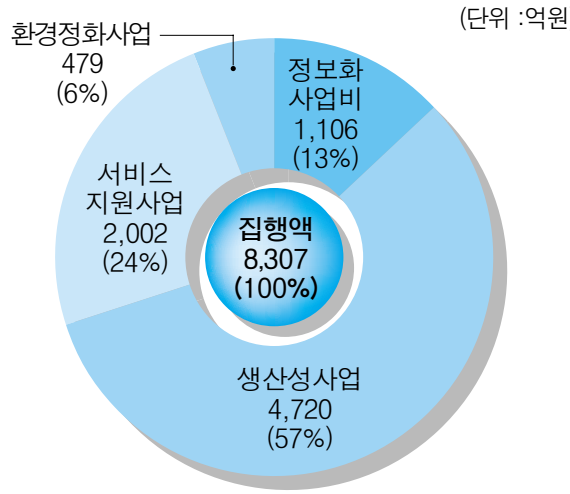
특히, 2000년도 사업의 특색은 『공공근로 기동점검단』을 상설 · 운영토록 하였다.

(단위 :억원)




**[그림6-5-1] 공공근로사업 예산항목별 집행액**

공공근로 기동점검단은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력중 기술자격 소지자 등을 선발하여 시·군·구별로 기동단을 조직,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개·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그림6-5-2] 공공근로사업별 예산투입액

기동점검단 편성은 232개 시·군·구와 2개 출장소 등 총 237개 기동단에 연인원 2,220명이 참가하였다. 외장반, 실내반 등 1개반에 10여명으로 편성 운영된 기동점검단은 총 4,707개소의 시설을 개·보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 라. 評價 및 向後 推進計劃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도장, 미장공 등 기능보유 실업자들의 산업현장 복귀로 운영상의 애로는 있었으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및 서비스 기능 확대로 국민편익을 증진한 수범적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1,143천명이 신청하여 795천명을 선발(69.6%) 투입함으로써 연인원 27,933천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 공공근로사업 현장 및 추진유공자 229명과 207개 기관 단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또한, 우수사업 추진사례 발표나 분임토의, 우수사업 현장견학 등을 통해 공공근로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전국의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상호간의 Know-How의 교환과 우수사례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상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면서 보다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